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4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3. 11.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오승환)

가. 제안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13.12.12)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변동없음
 - 총 정원 : 1,288명 (총 정원 내에서 정원조정)
 - 일반직 : 1,282명 / 별정직·정무직 : 5명 / 연구직 : 1명
- 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현 행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변경 후	99% 이상	삭제	1 % 이내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

구 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100%	1%이내	7%이내	23%이내	33%이내	30%이내	6%이상	-
변경 후	100%	1%이내	6%이내	21%이내	33%이내	31%이내	7.5%이상	0.5%이내

- 기능직 공무원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00%	6%이내	42%이내	48%이내	4%이상
변경 후	0%	0%이내	0%이내	0%이내	0%이상

- 연구직공무원 <신 설>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0% 이내	100% 이상

- 별정직 공무원

구 분	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현 행	100%	0%	34%이내	51%이내	15%이상
변경 후	100%	0%이내	30%이내	55%이내	15%이상

○ 직급별 정원표 조정 - 안 제4조 관련 【별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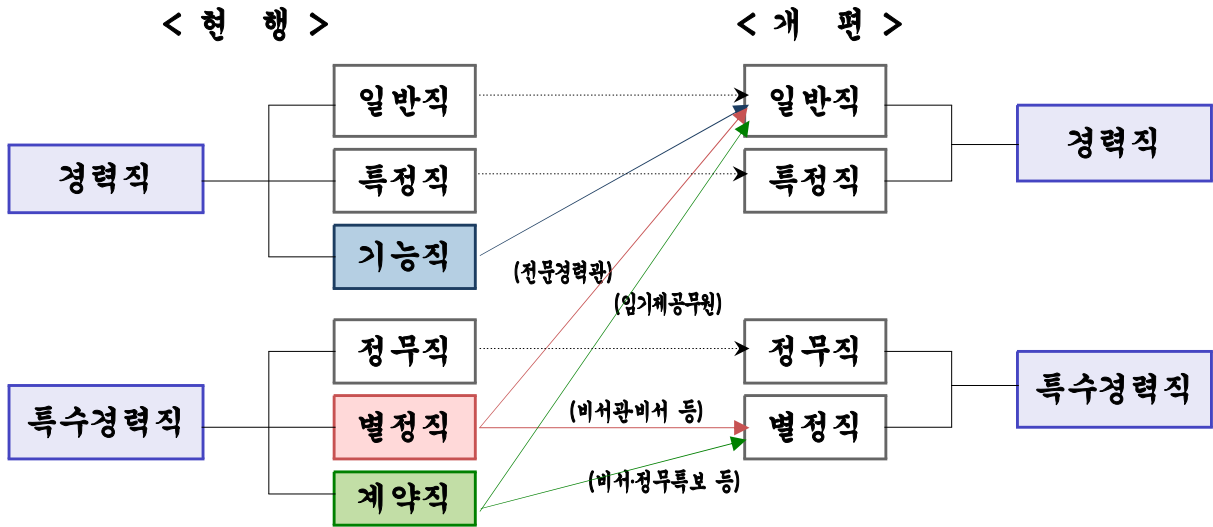
구 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	기능직 계	연구직 계
			계	3급~5급	6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1,288	1	1,083	69	1,014		12	192	
변경 후	1,288	1	1,282	69	1,211	2	4	<삭제>	1
증 감	-	-	+199	-	+197	+2	△8	△192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1531호, '12.12.11 일부개정, '13.12.12 시행)에 의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

하고, 6개로 세분화된 직종을 4개로 통합간소화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개 편 방 안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능직의 경우, 업무특성에 따라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1단계로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며, 2단계로 행정·기술직군내 유사직렬로 시험을 거쳐 전직기회가 부여되며, 기존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술직군에 직렬을 신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됨.
- 별정직의 경우,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공무원과 관계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의회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존치되고, 그 외 업무성격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 또는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에 장기재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지정되며,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경우 전담직위를 지정하여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되고,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속기' 직렬은 신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됨.
- 계약직의 경우, 이를 폐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되며 채용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동안 근무하도록 하고 있음.

【 전환 개요 】

구분	업무성격	전환개요
기능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 관리운영직군 임용 → 전직시험 거쳐 유사직렬로 전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는 경우	⇒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
별정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 해당직렬로 임용, 전담직위 지정 → 전담직위평가 후 해제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특정 전문분야 담당, 순환전보 곤란	⇒ 전문경력관 지정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상당인원 재직, 체급제적 성격	⇒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
	임기가 있는 직위	⇒ 임기제 일반직
계약직	비서관비서, 정무특보, 국제관계대사 등 정무직 보조·보좌인력	⇒ 별정직
	그 외 계약직	⇒ 임기제 일반직

-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능직공무원 192명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폐합하고, 1) 별정직공무원 정원 12명 중 7명은 일반직(전문경력관 포함)으로, 1명은 연구직 정원으로 전환시키고, 계약직공무원 96명은 임기제 또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음.

- 일반직 정원 : 1,083명 → 1,282명 (증 199명)
- 기능직 정원 : 192명 → 0명 (감 192명)
- 별정직 정원 : 12명 → 4명 (감 8명)
- 연구직 정원 : 0명 → 1명 (증 1명)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총 정원(1,288명)의 변동없이 기능직은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직위의 성격에 따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은 폐지하면서 직위의 성격에 따라 임기제 또는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분류하여 직종별 정원과 정원 책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1) 별정직 12명(비서 4, 속기 4, 체육지도사 2, 화생방 1, 기록물관리 1) ⇒ 일반직 7명
 【행정직군 6(속기4, 체육지도사2), 전문경력관 1명(화생방)】, 연구직 1명(기록물관리)

- 검토결과 정원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간 직종 통합을 통해 소수 직종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능직이 일반직에 통합될 경우 이들 중, 사무직군의 기능직은 현재 행정직렬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 및 정책 직무를 담당할 수도 있음. 이들의 경우, 직종 통합에 따라 담당 직무의 성격이 바뀌게 되므로, 새로운 직무적응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재교육과 성과관리 등을 통해 직종 통합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46 호
----------	---------

제출연월일 : 2013.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13.12.12)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변동없음

- 총 정원 : 1,288명 (총 정원 내에서 정원조정)
- 일반직 : 1,282명 / 별정직·정무직 : 5명 / 연구직 : 1명

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 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현 행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변경 후	99% 이상	삭제	1 % 이내

다.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

구 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100%	1%이내	7%이내	23%이내	33%이내	30%이내	6%이상	-
변경 후	100%	1%이내	6%이내	21%이내	33%이내	31%이내	7.5%이상	0.5%이내

○ 기능직 공무원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00%	6%이내	42%이내	48%이내	4%이상
변경후	0%	0%이내	0%이내	0%이내	0%이상

○ 연구직공무원 <신 설>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0% 이내	100% 이상

○ 별정직 공무원

구 분	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현 행	100%	0%	34%이내	51%이내	15%이상
변경후	100%	0%이내	30%이내	55%이내	15%이상

라. 직급별 정원표 조정 - 안 제4조 관련 【별표3】

구 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	기능직 계	연구직 계
			계	3급~5급	6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1,288	1	1,083	69	1,014		12	192	
변경후	1,288	1	1,282	69	1,211	2	4	<삭제>	1
증 감	-	-	+199	-	+197	+2	△8	△192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10.31~11.4, 4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대상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대상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을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로 한다.

제5조 중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을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으로 한다.

별표 1, 2,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 력관
비 율	1%이내	6%이내	21%이내	33%이내	31%이내	7.5%이상	0.5% 이내

비 고

1.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0% 이내	10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0% 이내	30% 이내	55% 이내	15% 이상	

비 고

1.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88	1,288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282	1,282			
일 반 직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61	30	2	11	18
	6급 이하 소계	1,211	1,211			
	전문경력 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한다.</p> <p>제5조(직렬별 정원) <u>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u>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직급별 정원) ----- -----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p> <p>제5조(직렬별 정원) <u>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u>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p>

현 행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기능직 <삭제>	별정직·정무직
비율	78% 이상	20% 이내 <삭제>	2%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3% 이내	33% 이내	30% 이내	6% 이상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삭제>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6% 이내	42% 이내	48% 이내	4%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0%	34% 이내	51% 이내	15% 이상	

비 고

1.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개 정 안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3% 이내	31% 이내	7.5% 이상	0.5% 이내

비 고

<삭제>

1.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공무원 (신설)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0% 이내	10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0% 이내	30% 이내	55% 이내	15% 이상	

비 고

1.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4조)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4조)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구의회 사무국</th> <th>보건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288</td> <td colspan="4">1,288</td> </tr> <tr> <td>정무직</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83</td> <td colspan="4">1,083</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7</td> <td>5</td> <td>1</td> <td>1</td> <td>-</td> </tr> <tr> <td>5급</td> <td>61</td> <td>30</td> <td>2</td> <td>11</td> <td>18</td> </tr> <tr> <td>6급 이하</td> <td>1,014</td> <td colspan="4">1,014</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r> <tr> <td>별정직계</td> <td>12</td> <td colspan="4">12</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r> <tr> <td>기능직계</td> <td><u>192</u></td> <td colspan="4"><u>192</u></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88	1,288				정무직	1	1				일반직계	1,083	1,083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61	30	2	11	18	6급 이하	1,014	1,014				<신 설>						별정직계	12	12				<신 설>						<신 설>						기능직계	<u>192</u>	<u>192</u>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구의회 사무국</th> <th>보건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288</td> <td colspan="4">1,288</td> </tr> <tr> <td>정무직</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1,282</u></td> <td colspan="4"><u>1,282</u></td> </tr> <tr> <td rowspan="5">일 반 직</td> <td>3급</td> <td>(현</td> <td>행 과</td> <td>같 음)</td> <td></td> </tr> <tr> <td>4급</td> <td>(현</td> <td>행 과</td> <td>같 음)</td> <td></td> </tr> <tr> <td>5급</td> <td>(현</td> <td>행 과</td> <td>같 음)</td> <td></td> </tr> <tr> <td>6급이하 소계</td> <td><u>1,211</u></td> <td colspan="3"><u>1,211</u></td> </tr> <tr> <td>전문 경력관 소계</td> <td><u>2</u></td> <td colspan="3"><u>2</u></td> </tr> <tr> <td>별정직 계</td> <td><u>4</u></td> <td colspan="4"><u>4</u></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u>4</u></td> <td colspan="4"><u>4</u></td> </tr> <tr> <td>연구직 계</td> <td><u>1</u></td> <td colspan="4"><u>1</u></td> </tr> <tr> <td>연구사</td> <td><u>1</u></td> <td colspan="4"><u>1</u></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88	1,288				정무직	1	1				일반직 계	<u>1,282</u>	<u>1,282</u>				일 반 직	3급	(현	행 과	같 음)		4급	(현	행 과	같 음)		5급	(현	행 과	같 음)		6급이하 소계	<u>1,211</u>	<u>1,211</u>			전문 경력관 소계	<u>2</u>	<u>2</u>			별정직 계	<u>4</u>	<u>4</u>				6급 상당 이하	<u>4</u>	<u>4</u>				연구직 계	<u>1</u>	<u>1</u>				연구사	<u>1</u>	<u>1</u>				<u><삭 제></u>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88	1,288																																																																																																																																																																							
정무직	1	1																																																																																																																																																																							
일반직계	1,083	1,083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61	30	2	11	18																																																																																																																																																																				
6급 이하	1,014	1,014																																																																																																																																																																							
<신 설>																																																																																																																																																																									
별정직계	12	12																																																																																																																																																																							
<신 설>																																																																																																																																																																									
<신 설>																																																																																																																																																																									
기능직계	<u>192</u>	<u>192</u>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88	1,288																																																																																																																																																																							
정무직	1	1																																																																																																																																																																							
일반직 계	<u>1,282</u>	<u>1,282</u>																																																																																																																																																																							
일 반 직	3급	(현	행 과	같 음)																																																																																																																																																																					
	4급	(현	행 과	같 음)																																																																																																																																																																					
	5급	(현	행 과	같 음)																																																																																																																																																																					
	6급이하 소계	<u>1,211</u>	<u>1,211</u>																																																																																																																																																																						
	전문 경력관 소계	<u>2</u>	<u>2</u>																																																																																																																																																																						
별정직 계	<u>4</u>	<u>4</u>																																																																																																																																																																							
6급 상당 이하	<u>4</u>	<u>4</u>																																																																																																																																																																							
연구직 계	<u>1</u>	<u>1</u>																																																																																																																																																																							
연구사	<u>1</u>	<u>1</u>																																																																																																																																																																							
<u><삭 제></u>																																																																																																																																																																									